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1088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정대용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2. C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35,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2.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24,8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F 지상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1. 10.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F 건물을 임대기간 2020. 5. 13.부터 2022.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2022. 4. 3. F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F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 사건 화재는 E이 야적장에 적치한 폐배터리 등이 외부 요인(파쇄작업, 폐기물 적치 등)에 의해 압착·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E은 2022. 4. 1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22. 4.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E의 사내이사인 D은 2022. 4.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2. 4. 22. 접수 제258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채권자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E의 폐배터리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E의 대표자인

D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이나 D은 이 사건 자동차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E이나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E이나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는 E 또는 D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어 E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② 피고 C는 자원재활용업에 실제로 쓰기 위해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중고 5톤 집게차의 시세는 대략 9,000만 원 내지 1억 원인데 피고는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시세와 비슷한 9,8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E 또는 D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어 D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G에게 임대하였는바, 임대수입 등을 얻기 위한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H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매수하였는바,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시세 약 5억 5,500만 원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기는 하나 현저히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별지목록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4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시흥시 대 23089.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3089.5분의 85.694

별지목록2

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B8W-1-00981-0000-3318

차명: 함코1.9톤중임크레인집게차

차종: 화물 대형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D6GB

사용분거지(차고지): 경기도 화성시 동

등록연월일 : 2018-03-09

- 이 상 -

